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61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진료지원업무 수행	3

I. 개요

1.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861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나.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중 업무수행)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시행일: 공포한 날

나. 검토의견

- 「간호법」 제정 이전 구 「의료법」¹⁾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규정

1) 구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하였고, 대법원 판례²⁾는 의료행위를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와 ‘간호사에게 지시·위임이 가능한 의료 행위’³⁾로 구별하였음.

□ 이에 그동안 간호사로서 의사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등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현장 수요에 따라 음성적으로 수행되고 있었으나 「간호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는데, 현행법 제14조⁴⁾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현행법 제14조제1항제1호)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현행법 제14조제1항제2호)을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한편,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보유의 경우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3년 이

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가.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호는 ‘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3) 판례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증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① 진단보조행위,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 진행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②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투약 등을 돕는 ③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음.

4)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상이어야 하고,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 요구됨⁵⁾.

□ 즉 현행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교육과정 중 이루어지는 실습교육 시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일정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의료법」⁶⁾에서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되,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차원에서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시행 2026. 8. 11.]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제정]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첫째, 현행법⁷⁾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한정적으로 허용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과정 중에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 및 일반적 지도·위임 없이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현행법 제14조제1항제1호),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현행법 제5조제2항제1호⁸⁾) 그 교육과정에서도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필요할 것이나, 개정안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셋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료지원업무를 기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 등의 감독 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법률 또는 최소한 하위법령에서 교육과정 중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업무는 감독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간호법」 제12조(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는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8) 「간호법」 제5조(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참고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게 허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⁹⁾.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은 현장실습교육(OJT) 이수가 필수이므로 교육과정 이수 중인 자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육생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실습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한간호사협회

- 현재 간호사가 현장 실습교육으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

9)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2.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항공안전법」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 ②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행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가 명확해짐.

□ 대한의사협회

- 진료지원업무는 의사의 고유 의료행위 영역과 직접 맞닿아 있는 사항으로서, 그 수행자격·범위·감독체계가 명확히 정비된 상태에서 환자안전이 담보될 수 있음. 그러나 동 개정안은 ① 현행 간호법이 마련한 자격제도를 실질적으로 우회하고, ② 지도·감독 체계와 환자안전 장치가 정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허용함으로써 의료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환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바, '반대'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494